THE LEGAL AID SOCIETY
Justice in Every Borough.

공적부조에 관한 주요 질문 및 도움 받는 방법

공적부조란 무엇인가? "공적부조(Public Charge)"는 이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누군가 합법적인 영주권 (LPR /"그린 카드" 신분)을 신청할 때 미국 이민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심사 과정의 일부입니다. 공적부조로 간주되는 사람은 공적부조 보석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이 발효되는 공적부조 규칙이 있습니까? 예, 2020 년 2 월 24 일자로 발효되었으나, 이 규칙은 공적부조 대상이 되고(아래 참조) 2020 년 2 월 24 일 또는 그 이후로 우편소인이 찍힌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의 변경/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이에게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적부조 규칙은 다음 그룹에 적용됩니다:

1. 가족, 직장, 또는 인구 다양성 비자 추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2.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a) 180 일 이상 계속하여 외국 여행을 하였거나, 또는 (b) 특정 형사유죄 판결(또는 둘다)을 받은 사람으로 외국 여행을 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들.
3. 비이민 비자의 변경/연장 신청한 사람들.

주: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거나***, 비이민 비자를 변경/연장 신청중이고, 또는 이미 영주권이 있고 180 일 이상 계속하여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또는 특정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외의 경우(아래 참조)를 제외하고, 공적부조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민자에게 공적부조가 적용됩니까? 아니요. 아래에 나열된 항목의 사람들은 공적부조로 인해 영주권이 거부될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부조로 인해 영주권 거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적부조에서 제외되는 사람:**
미국 시민권자 또는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	난민, 망명자 및 해약을 원하는 사람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사람 (조건부 상태에 있는 사람 포함) (180 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특정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 이민 청소년 (SIJ);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 (미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 국민).
계속하여 180 일 **이내로** 해외 여행하는 합법적 영주권자 (또는 범죄 유죄 판결 없는 사람)	VAWA, U, 및 T 비자 신청자와 소지자.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신분상태도 없으며 36 개월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사람으로 비이민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계획이 없는 사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쿠바 조정법 (CAA), 니카라과 조정 및 중앙 아메리카 구호 법 (NACARA), 아이티 난민 이민 공정성 법 (HRIFA) 또는 라이베리아 난민 이민 공정성 법에 따라 조정 자격이있는 사람.

고객이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하십시오**: 고객이 이미 이민 전문 변호사가 있고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새 규칙이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 **변호사 고용**: 고객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없는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 시에서 오후 5 시 사이에 ActionNYC 에 800-354-0365 로 전화하거나 311 에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하여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 **고객에게 공적부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5 시 사이에 844-955-3425 로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의 이민 헬프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헬프 라인 직원이 정보를 수집하여 저희 공적부조 팀에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칙아래 어느 혜택이 부정적으로 취급됩니까? 새로운 규칙아래서는 다음의 혜택이 부정적으로 취급됩니다:

a) 현금 도움, 사회보장 보조금 (SSI);
b) 정부 제공 장기 시설 요양;
c) 영양 보조 프로그램 (SNAP);
d) 매우 적은 이민자 그룹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메디케이드 (주 자금 지원 메디케이드, 필수 플랜, 아동 건강 플랜, NYC 케어 및 기타 형태의 병원 재정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e) 뉴욕시 주택국 (NYCHA) / 공공 주택 또는 섹션 8.

2020 년 2 월 24 일 이전에 사용된 혜택은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신청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까? 예. 2020 년 2 월 24 일 이전에 사용된 상기 카테고리 (a) 및 (b)는 신청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c)-(e)의 혜택은 **2020 년 2 월 24 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된 경우에만** 부정적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혜택 사용 외에, 신청자가 공적부조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다른 요인은 무엇입니까?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많은 이민자들과 비이민자들은 위에 열거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것이 공적부조가 발견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적부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곤수준에서 250% 이하 소득; • 무직; • 18 세 미만 또는 61 세 이상;	• 장애인; • 부채 또는 낮은 신용 점수; •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

고객이 공적부조로 인해 혜택 케이스를 얻거나 유지하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기 전에 고객이 공적부조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에 나열된 도움처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의뢰인이 증상이 와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하거나 병원 진료를 포함하여 기타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 경우 공적부조 위험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코로나-19 와 관련되어 공적부조 대상이 될 수 있는 뉴욕내 의료진료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국(USCIS)는 코로나-19 관련 치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가정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과거 경험으로는, 많은 비시민자들은 실제로 공적부조 검토 대상이 아니어도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공적부조 염려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적부조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다음 웹사이트에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www.legalaidnyc.org/notice/public-charge/